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

(2020. 3. 31 현재)

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3조의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출자자(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공시합니다.

-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한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범위 이내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신용공여 대상회사	신용공여 내용	통화	여신금액			신용공여금액 ^{주)}			자금용도	신용공여기간		적용	담보		기타
				한도	잔액	미사용한도	19.12월말	20.3월말	증감	1100	취급일	만기일	금리	종류	평가액	특별약정내용
대주주	예금보험공사	공공)일반자금대출	KRW	1,000,000	-	1,000,000	500,000	500,000	0	운전자금	2016.08.29	2020.08.28	2.26	-	-	-

주) 신용공여금액은 법령에 의거한 환산금액임(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4조 ②항)